

등록번호의 새김방법(제14조 관련)

1. 등록번호의 새김방법

가. 건설기계의 차대에 제작회사의 제작일련번호(이하 이 호에서 "차대 일련번호"라 한다)가 새겨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건설기계의 등록번호의 새김으로 본다.

나. 차대일련번호가 새겨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할 때 부여받은 등록번호(예 : 012가4568)를 새긴다.

다. 법 제11조에 따라 시·도지사가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식별하기 곤란하여 이를 지우고 다시 새길 것을 명한 경우, 종전에 새긴 차대일련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다시 새긴다.

2. 활자의 크기 : 3호활자

3. 정정각인부호 : "X"로 한다.